

국 무 총 리 행 정 조 정 실

국무총리지시제 4 호

(720-2153)

1985. 3. 18.

수 신 수신처참조

제 목 청소년지도교육에 관한 지시

청소년선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, 올바른 자녀지도방법을 국민에게 널리 이해·주지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에 관한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지도교실을 확대설치하는 한편 그 운영을 효율화하도록 별첨 사항을 지시하니 각 주무부처는 교육실시기관 또는 단체의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,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.

첨 부 청소년지도직장교육 및 청소년지도교실운영강화방안 1부. 끝.

국 무 총 리

수신처 가(10 ~ 35), 나(1)

(별첨)

청소년지도 직장교육 및 청소년지도교실 운영강화 방안

1. 청소년지도 직장교육 활성화

각 직장단위로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정신교육에 청소년지도에 관한 교육을 포함실시

-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·단체의 직장교육에 청소년지도 교육포함(총무처)
-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청소년지도과목 반영(총무처)
- 각급 행정기관의 유관 민간기관·단체의 직장교육에 청소년지도교육을 적극권장(각부처)

2. 청소년지도교실 운영강화

각부처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청소년지도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여 학부모, 신도, 단체회원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

- 중앙에서 보급하는 교재가 부족할 때는 각 교육실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 제작된 교육자료의 내용을 발췌 또는 복사 활용.
4. 교육담당자로 유능한 전문인사 활용(각부처)
- 청소년지도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 저명인사에 위촉
 - 각급 청소년대책위원회 위원 활용
5. 교육장소 확보(각부처)
- 교육실시기관별 자체시설 활용
 - 시민회관등 각종집회시설 및 교육시설 활용
6. 청소년지도교육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(내무부, 문공부)
- 매스콤 활용
 - 반상회 활용
 - 공익광고방송 확대

- 각급학교에서 학부모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지도교실 개설 및 운영강화(문교부)
- 기타 각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역실정과 교육여건이 허용하는 한 농민, 근로자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지도교실의 개설·운영(각부처)
- 각종 사회복지기관, 종교단체등에 대하여 단체회원, 신도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지도교실설치 권장(각부처)

3. 교육자료개발 및 보급확대

- 청소년지도교육 강화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소요에 대비, 기 발간자료의 보급확대(문교부)
- 산하 청소년단체, 한국교육개발원, 여성개발원등을 통해 신규자료 개발(문교부, 보사부)
 - 자료내용 : 청소년의 특성, 자녀생활지도기법, 바람직한 부모상 및 성공사례 등
 - 자료종류 : 책자, 슬라이드, 영화, 만화 등 알기쉽고 설득력이 있는 형태로 제작